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00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00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가소424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4. 8.

판결 선고 2020. 4. 22.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가소424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3. 7. 인천 중구 C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6548호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8.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 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인천 중구 C 지상 건물을 신축하던 시기에 인천 중구 E, F, G, H 각 지상에 각 지번별로 1개동씩 4개의 건물도 함께 신축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5. 9. 18. 위 총 5개동 건물의 호실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8개 호실 전체를 보증금 28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5년경 월 차임은 500,000원(=14,000,000원 ÷ 28개 호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2016. 9. 6.부터 월 50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권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6. 9. 이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시기 이전인 2016. 6.경 이미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이므로(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의 2019. 7. 18.자 항소이유서 3쪽 참조), 피고가 2016. 9. 이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1동 소재 5개동 건물들을 관리하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9952호로 용역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5. 15.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위 용역비 청구 사건에서 주장한 사실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용역비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위 용역비 청구 사건에서 주장하지 않은 용역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753,113원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6.부터 건물명도 소송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500,000원(원고는 2016. 9. 6.부터 13개월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만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재환

판사송한도

판사박정미